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대보호구역의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 포함〉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79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9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및 행위 유해 인식	11
3. 봉안시설 현황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0.

다. 회 부 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과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하고 상대보호구역의 경우, 금지된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면서, 심의 대상 행위 및 시설에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시설,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 총포·화약류 제조소 및 저장소, 감염병 격리소, 담배자동판매기, 게임제공업, 게임물시설, 무도장, 경마장, 사행행위영업,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업, 단란·유흥주점영업, 숙박업,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 카지노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32호).

그러나 봉안시설이 상기 열거된 시설에 비추어 특별히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야 할 유해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시설로 지정하였음. 그러나 종교시설 내 설치된 봉안시설은 종교의 자유와 결합된 고인에 대한 추모공간이자 교육환경 측면에서도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화적·철학적 성찰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상대보호구역의 예외 규정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 허용될 수 있는 시설에 종교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 ----- -----제9호의 봉안시설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 제14호부터----- ----- -----.
1. ~ 32. (생략)	1. ~ 32. (현행과 같음)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은 제2조제1호¹⁾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1) 교육환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교육환경”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9조²⁾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현행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하는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으로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³⁾되고,

<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2) 【참고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3) 교육환경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절대보호구역은 물론 상대보호구역에서도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등의 시설(교육환경법 제9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이 있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⁴⁾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 및 시설에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담배자동판매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이 있음(교육환경법 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 내용
절대 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미터 이내 지역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근본적으로 금지 (제9조제1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상대 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시설 허용 (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4) 교육환경법

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제9호⁵⁾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⁶⁾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즉,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봉안시설이 추가된 것은 2005년 12월으로⁷⁾, 학교 부근의 납골시설이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법적으로 규제하기로 한 것인데,

개정안은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는 예외로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5)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8. (생략)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중종·문종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 32. (생략)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7) (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납골시설을 추가함(법률 제7396호에서 법률 제7700호로 개정)

봉안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여타 절대적 금지시설과 달리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지 않고, 다른 금지 행위 및 시설에 비해 유해 인식 수준이 낮은 것⁸⁾을 근거로 판단할 때,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제9호에 따르면, 자연장지 중 개인·가족 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상대보호구역은 물론 절대보호구역에서도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봉안시설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조치로 보임.

다만,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 외에도 개인·가족, 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봉안시설도 존재하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설립주체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시설의 설치·운영을 금지한 법률 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헌임을 결정⁹⁾하

8) 2022년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주관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등 17,7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시설 및 행위 유해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해 인식도 평균은 76점인데 반해 봉안시설에 대한 유해 인식도는 68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2016. 2.) 이전의 (구)「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였는 바, 동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림(헌법재판소 2009.7.30. 선고 2008헌가2 결정).

면서, 국회의 정책적 판단·선택의 영역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음.

<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 교육부: 신중검토 - 종교시설에 설치된 봉안시설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에 활용될 수 있는 등 봉안시설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 공감함 - 다만,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음에도 설립 주체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해 종교시설에서 설치한 시설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함
○ 보건복지부(봉안시설 소관 부처): 신중검토 - 종교시설에 대해 봉안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①운영주체(사설, 종교단체 등) 간 형평성 문제 제기, ②그간 설치가 제한된 시설의 허용으로 지역주민과 종교단체 봉안시설 운영자 간의 갈등 가능성, ③사설 봉안시설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¹⁰⁾이라는 점 등을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84

<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 입법재량에 관한 부분 >

- 헌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31조 제6항). 이에 따라 국가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교육의 책임과 함께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전반적·포괄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가진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이에 따라 국가는 학교의 보건위생과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으며,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한에 맡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법률조항도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에 기한 것으로서 입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국회의 정책적 판단·선택권이 넓게 인정되며, 국회의 입법결정이 입법형성권한의 재량을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러나 헌법이 국가에게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교육환경에 대한 규율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보호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10) 종교단체 봉안시설 현황('23.12월) : 봉안능력(1,419천구), 기봉안(392천구, **안치율 27.6%**), 잔여분(1,027천구)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11.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6.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충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2.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6.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8. 삭제
29.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30.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3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참고자료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및 행위 유해 인식

(단위: 환산점)

구분	전체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 자치단체 공무원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환경 보호위원
전체 유해 인식도 평균	76	69	86	80	74	76	83
응답자 수(N)	17,772	10,502	4,720	1,896	197	231	226
물리적환경 관련 시설 유해 인식도 평균	80	74	89	80	80	79	86
환경기준 초과 공해업소	84	77	93	90	91	87	93
고압·도시·액화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83	76	93	87	80	80	89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87	81	95	92	89	88	94
총포사 / 화약류 제조소 및 저장소	86	80	94	90	83	87	92
감염병원, 격리소	77	72	86	74	71	77	83
감염병 요양소/진료소	66	62	74	62	64	64	70
화장장 (화장시설)	74	68	84	70	72	70	81
납골당 (봉안시설)	68	62	78	62	62	63	73
가축시장	76	71	85	73	77	73	80
도축장	80	75	89	80	84	81	89
가축분뇨처리시설	84	78	92	85	85	83	91
가축소각·매몰지	86	80	94	88	89	87	94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84	78	92	85	81	81	89
폐기물처리시설	84	78	92	85	86	82	90
폐수종말처리시설	83	78	92	83	87	79	88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유해 인식도 평균	83	75	92	88	80	84	91
성인영화관 / 제한상영관	85	77	94	91	90	88	94
성인용품점	87	79	94	92	91	87	95
전화방, 화상대화방	79	64	94	92	93	87	94
신종변종업소	90	84	96	96	95	94	98
단란주점 / 노래주점	87	82	94	90	78	89	92
유흥주점	89	84	95	93	82	91	94
비디오방(비디오물감상실)	78	67	91	87	77	78	89
멀티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74	61	90	83	73	73	88
담배자동판매기	89	85	94	92	83	89	92
경마장 / 화상경마장 / 장외발매소	86	79	93	89	78	85	92
경륜장 / 화상경륜장 / 장외매장	86	80	93	89	78	86	91
경정장 / 화상경정장 / 장외매장	86	80	93	89	77	86	91
사행행위장	90	85	95	93	88	90	96
무도장	80	72	90	85	68	81	86
무도학원	60	50	73	65	46	56	68
청소년출입가능업소 유해 인식도 평균	55	48	68	61	54	53	63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57	51	67	63	65	53	65
(청소년) 오락실(게임제공업) *	57	49	70	65	65	56	69
미니게임기 *	49	44	57	54	54	45	54
노래연습장 / 노래방 *	50	42	64	58	54	51	65
여관 / 모텔 / 호텔(숙박업소) *	70	61	87	82	68	74	84
관광호텔 *	57	49	73	64	47	53	66
당구장	58	51	69	58	37	53	56
만화가게 / 만화카페 *	43	38	53	48	37	40	49

주 1) * 표시한 항목은 초등학교생을 포함하여 응답하게 함.

2) 원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반올림한 것으로 표 내의 평균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한국교육환경보호원, 「2022 교육환경보호제도 인식도 조사 연구」

참고자료 3

봉안시설 현황¹¹⁾

○ 최근 3년간 봉안시설 현황

(단위 : 개소수)

구분	구분	화장시설	묘지	봉안당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2021	계	62	500	435(576)	164	1,107
	공설	61	332	145(192)	70	76
	사설	1	168	290(384)	94	1,031
2022	계	62	499	442(594)	184	1,102
	공설	61	328	145(194)	77	77
	사설	1	171	297(400)	107	1,025
2023	계	62	501	448(611)	192	1,086
	공설	61	329	146(198)	78	79
	사설	1	172	302(413)	114	1,007

※ 사설 장사시설 중 법인, 종교단체 시설만 포함

○ 봉안시설 유형별 현황('23.12월말 기준)

(단위 : 천구)

구 분		개소수			봉안시설 안치 현황(천구)			안치율 (%)
		봉안 당	봉안 묘·탑· 담	합계	봉안능력	기 봉안	잔여분	
합 계		448	163	611	6,550	2,486	4,064	38.0
공 설		146	52	198	2,044	1,349	695	66.0
사 설	소계	302	111	413	4,506	1,137	3,369	25.2
	법인	83	55	138	3,087	745	2,342	24.1
	종교	219	56	275	1,419	392	1,027	27.6

11)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도 장사업무 통계」, 2024.10.

○ 시도별 종교단체 봉안시설 현황('23.12월말 기준)

시도	시군구	개소수			연면적 (㎡)	봉안현황(구)		
		봉안 당	봉안 묘·탑· 답	합계		총봉안능력 [A]	기봉안 구수[B]	향후봉안가능 구수[A-B]
계	107	219	56	275	216,259	1,418,646	392,278	1,026,368
서울	8	12	0	12	3,318	20,208	13,907	6,301
부산	3	3	0	3	1,287	9,188	8,020	1,168
대구	4	9	1	10	6,599	45,228	16,952	28,276
인천	4	6	0	6	8,341	44,237	10,331	33,906
광주	1	2	0	2	4,431	3,000	1,462	1,538
대전	3	2	1	3	2,583	14,457	5,485	8,972
울산	3	3	0	3	1,476	7,840	2,361	5,479
세종	-	3	0	3	1,125	2,930	243	2,687
경기	21	62	23	85	56,515	553,858	153,520	400,338
강원	4	7	1	8	3,319	16,764	5,038	11,726
충북	8	18	9	27	17,937	194,936	33,503	161,433
충남	7	10	4	14	8,587	162,683	57,865	104,818
전북	6	9	0	9	6,877	54,494	24,900	29,594
전남	11	17	4	21	59,424	59,795	15,192	44,603
경북	10	22	7	29	7,452	69,941	17,467	52,474
경남	12	29	4	33	21,172	133,605	20,215	113,390
제주	2	5	2	7	5,818	25,482	5,817	19,665